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7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정일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9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목적,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 - (기존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 - (변경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비함(안 제3조)
- 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을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, 제명을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.
- 안 제1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.

-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4조는 센터의 입주대상을 충청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목적 및 사업 등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북대동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지원
2. 회의실 및 교육장 대관 지원
3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

②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)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: 이용료 면제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사:
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관리·운영비 지원) 센터의 관리·운영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센터 이용료

구분	기준	이용료		비고
		기본	추가	
다목적실	평일 2시간 이내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시간 초과 이용 : 시간당 20퍼센트 가산 	냉·난방시설 이용시 :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	토·일·공휴일 2시간 이내	100,000원		
기타시설		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차. 「입양특례법」
- 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- 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- 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- 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더. 「의료급여법」
- 러. 「기초연금법」
- 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- 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퍼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2. “지역사회복지”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법인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4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5. “사회복지관”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6. “사회복지서비스”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7. “보건의료서비스”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목적,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에 따른 이용료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(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대관 시 이용료 면제
- 냉난방 이용 시 실비 정산 후 부과

나. 추계 결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대관 시 이용료 면제
→ 기존에도 지자체 대관 요청 시 이용료 면제하고 있어 수입금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- 냉난방 이용 시 실비 정산 후 부과
→ 사용면적 × 부하요금 ×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여 부과

구분	산출근거	비고
기존(안)	이용료 × 20% (예시) 50,000원(이용료) × 20% = 10,000원	2시간 기준
개정(안)	사용면적 × 부하요금 × 사용시간 (예시) 391.2㎡ × 79.1원(부하요금) × 2시간 = 61,887원	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